

의안 번호	1220	【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2. 4.(목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2. 4.(목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2. 18.(목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제2항 개정(2015. 5. 18.)으로 고액·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,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 확대
: 3천만원 이상 → 1천만원 이상

4. 관련법령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제2항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(안)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40조제2항 개정(2015. 5.18)으로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어 법령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개정내용으로는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범위가 현행 3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가 되는 것임
-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, 상위법과 관련 규정 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